



통보

개정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| | |
|-----|--|
| 1. | 통보국가: <u>우크라이나</u>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 |
| 2. |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 우크라이나 보건부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. |
| 3. | 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X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 |
| 4. | 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화장품 |
| 5. | 제목(페이지수, 언어): "화장품 정보 제출 절차 승인에 관한"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안(13페이지, 우크라이나어) |
| 6. | 내용: 명령안은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의 승인을 제공한다. 이 명령안은 화장품 정보 제출 메커니즘과 화장품 정보의 전자적 제출 시스템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며, 이는 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, 축적, 보호, 표시, 데이터 처리 및 제공을 보장하는 정보통신망이다. 이 명령안은 2021년 1월 20일자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No. 65(G/TBT/N/UCR/145 및 G/TBT/N/UCR/145/Add.2에서 통지됨) 및 화장품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(EU) No. 1223/2009에 의해 승인된 화장품 기술규정 조항 31에 따라 작성되었다. 우크라이나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해야 한다. 이 시스템의 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화장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. |
| 7. |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 인체 건강 및 안전 보호, 품질 요구사항 |
| 8. | 관련 문서: "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" 및 "비식품 제품의 국가 시장감독 및 통제에 관한" 우크라이나 법률, "화장품의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한" 2021년 1월 20일자 우크라이나 내각의 결의안 제65호 |
| 9. | 채택 예정일: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: 2024-08-03 |
| 10. | 의견 마감일: 통보일로부터 60일 |

11.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X] 또는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

우크라이나 경제부

무역협정 및 수출개발부

12/2 Hrushevskoho Str.

전화: +(38 044) 596 6839

팩스: +(38 044) 596 6839

이메일: ep@me.gov.ua

웹사이트: <https://www.me.gov.ua>

<https://moz.gov.ua/article/public-discussions/proekt-nakazu-ministerstva-ohoroni-zdorov%e2%80%99ja-ukraini-pro-zatverdzhennja-porjadku-notifikacii-nadannja-informacii-pro-kosmetichnu-produkciju>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3/TBT/UKR/23_13777_00_x.pdf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3/TBT/UKR/23_13777_01_x.pdf